

히로시마 화장장등 건설반대 분쟁조정사건

자료제공 환경부

(사건 표시) 히로시마현1976년(조) 제1,2호사건

(절차 종류) 조정

(신청접수일) 제1호사건: 1976년4월1일

제2호사건: 1976년5월17일

(종결일 및 구분) 1976년6월25일 조정성립

(신청인) 제1호사건: 히로시마현 ○○○외 7명

제2호사건: 히로시마현 ○○○외 73명

(피신청인) ○○○시

(분쟁의 개요)

1. 피해발생지역 : 히로시마현 ○○○시

2. 청구내용

(1) ○○○시가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 투기는 즉시 중지할 것

(2) ○○○시가 현재 계획중인 직영 화장터 건설계획을 중지할 것

3. 이유

- (1) 신청인 마을은 옛날부터 우물물로 생활하는 겹업 농가가 많고 풍족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투기는 지역의 중금속 오염, 악취 등을 비롯해 예측불허의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 (3) 계획중인 직영 화장터는 특히 악취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농작물에도 피해를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시설인지 전혀 설명조차 없다
- (4) 쓰레기와 화장터의 양 시설은 근접해서 설치되어 이들 시설들이 복합적으로 지역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

(분쟁처리 경과일지)

76.4. 1 : 조정신청 접수

76.4. 6 : 조정위원 사전협의

76.5. 7 : 제1회 조정 (신청인, 피신청인 분리 의견 청취)

76.5.17 : 제2회 조정(현지조사)

76.5.17 : 제3회 조정(조정위원 협의)

76.5.24 : 제4회 조정(신청인, 피신청인분리 의견청취)

76.6.31 : 제5회 조정(양 당사자 동석 의견청취)

76.6. 5 : 제6회 조정(피신청인 의견청취)

76.6.16 : 제7회 조정(신청인 의견청취 후 양당사자 동석하여 조정조항에 대해서 의견청취)

76.6.25 : 제8회 조정 (조정성립)

조 정 조 서

상기 당사자간의 1976년(조) 제1호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서 1976년 6월25일 오후 3시 히로시마현청 회의실에서 조정위원장 및 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신청인들 및 참가자 대리인 변호사 및 피신청인 000시 대리인이 각각 출두하여 상기 조정회의에서 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쌍방의 주장, 의견 등을 청취하고 사실 조사 및 각종 자료를 수집, 검토한 후 조정을 추진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가화장터의 설치에 대해서

- (1) 신청인 및 참가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000시가 가화장터를 히로시마현 000시 산림내(면적 33,722평방미터 중 조성면적 6,222평방미터, 유효면적 1,729평방미터)에 설치하는 것에 동의한다.
- (2) 000시는 신청인의 협력을 얻어 가화장터에 이르는 연장 약 400m, 폭 4m, 도로부지 면적 약 10,400 평방미터의 도로를 용지매입하여 준공기간 3개월로 가급적 신속히 건설하기로 한다.

또한 본건 신설도로의 노선결정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장래의 토지이용을 고려하도록 한다.

- (3) 상기 도로 완성후의 가화장터 통로는 피신청인 000시의 영구차를 사용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특별한 사정(재해, 도로공사등)이 없는 한 신설도로로 통행하도록 지도하고, 그 밖의 영구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도로를 통행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한다.
- (4) 가화장터의 존속기간은 피신청인 000시가 계획 준비중인 종합공원의 착공시기를 1978년도로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 3년간 화장터를 건설하는 시기까지로 한다. 또한 소각로의 증설에 대해서는 현 계획(인체 소각로, 소, 동물 소각로 1기 및 부대 시설)이외의 증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5) 000시는 히로시마시와 합병하는 경우 가화장터 사용에 관한 합병조건에 000시 외의 주민 사용은 금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다른 구역 주민은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2. 쓰레기 매립처분에 대해서

- (1) 피신청인 000시는 불연성쓰레기의 매립처분지로서 종전의 산림내에 설치되어 있는 불연성쓰레기 투기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1978년 착공 예정인 종합공원계획과 연계하여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다. 만약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000시는 신청인 대표에게 경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 (2) 000시는 매립처분지 하류(현재 수질측정지점) 및 신청인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의 수질검

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그 측정결과를 신청인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 (3) 불연성쓰레기의 매립처분시 복토를 충분히 하고, 모기, 파리 등의 발생 방지 및 구제를 충분히 실시하도록 한다. 또 쓰레기 운반차는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 (4) 재이용할 수 있는 병, 빈캔 등을 매립처리를 하지 않고 재이용에 노력한다.

3.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기타 조치사항에 대해서

- 1) ○○○시는 전용도로의 확장과 1미터 보도의 설치를 1976년도부터 5년 계획으로 실시하며, 또한 방법등의 설치를 신속히 검토하고 조기실현에 노력한다.
- (2) ○○○시는 노인 휴식의 장소로서 철골2층, 연건평 200평방미터의 건물을 건설하고 1976년도에 완성하도록 노력한다.
- (3) ○○○시는 상수도 시설을 신청인 지역 구획정리사업과 함께 실시하도록 고려한다.
- (4) ○○○시는 신청인 지역내 자동차 통행 가능한 도로를 포장정비한다.
- (5) ○○○시는 신청인 지역내 전용도로에 면해 있는 신청인들의 주택에 대해서 필요한 곳부터 하천까지 배수관을 희망에 따라 설치한다.
- (6) ○○○시는 가화장터 건설공사장 및 가화장터 유지 관리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물이용에 영향이 없도록 배려한다.
- (7) ○○○시는 가화장터 건설공사 관련 차량의 통행에 대해서 러시아워 및 통근, 통학시간에는 통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공사관련 업자에게는 이 지역 차를 우선 통행시키도록 철저히 지도한다.

4. 본 조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 조서를 당사자 쌍방에 읽어준 결과 쌍방은 각각 그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서명 낼인했다.

「히로시마 화장장 등 운영본대 분쟁조정 사건」

(사건 표시) 히로시마현 1983년도(조)제1호사건

(절차 종류) 조정

(신청접수일) 1983년7월

(종결연월일 및 종결구분) 1983년 10월 조정성립

(신청인) ○○○시 ○○○회 181명

(피신청인) ○○○시

(분쟁의 개요)

1 피해발생지역 ○○○시 ○○○지역

2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이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투기를 중지할 것

(2) 피신청인이 현재 운영중인 직영 화장터의 운영을 중지할 것

3 이유

(1) ○○○시 신청인 인근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투기는 지역의 중금속오염, 악취 등을 비롯해 예측불허의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

(2) 동지역의 직영화장터는 특히 악취문제를 포함해 지역 환경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3) 쓰레기투기장과 화장터의 두 시설이 근접해서 설치되어 있어 이들 시설이 복합적으로 지역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4) 피신청인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고, 동지역에 두 시설이 병설되는 불연성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인 설명도 하지 않았다.

※ 분쟁조정신청 배경

신청인의 일부와 피신청인 사이에서는 1976년 8월 25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화장장 및 불연성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한 공해분쟁 조정이 성립되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화장장의 이전 및 불연성쓰레기 매립장의 수질측정, 복지시설의 설치 등의 의무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히로시마 현 공해심사회 1976년도(조)제1호사건), 피신청인은 이 의무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1981년 8월 25일 공해분쟁 처리법 제43조2에 의해 의무 이행권고를 신청했다.

그후 당사자간에 대화를 계속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하고자 본 조정신청에 이른 것이다.

(분쟁처리의 경과)

1983년 7월 29일 조정신청접수

1983년 8월 18일 조정위원 사전협의, 조정위원장, 조정위원

1983년 9월 9일 제1회 조정회의 (양 당사자 의견 청취)

1983년 10월 21일 제2회 조정회의 (조정성립)

조 정 조 서

상기 당사자간의 1983년도(조) 제1호 조정신청사건에 대해서 1983년 10월 21일 오후 1시 30분 히로시마 공제회관에서 조정위원장 및 조정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조정회의를 열었다

신청인대리인 변호사 외 신청인, 피신청인 000시 대리

인이 각각 출두하여 상기 회의에서 명확히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건 조정에서는 조정 신청전 당사자간에 장기간에 걸친 대화가 이루어져 조정 신청시에는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해 있었다.

본 조정위원회는 해당 합의에 기초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 의견 등을 청취, 검토하여 신중히 조정을 추진한 결과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조 정 조 항

1. 000시 화장터에 대해서

-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히로시마현 000시에 소재하는 000시 화장터(이하 「000시화장터」라 한다)가 계속 존속하는 것에 동의한다.
- (2) 신청인은 000시 화장터의 설치에 대해서 최신식의 인체소각로 2기를 피신청인이 증설하는 것에 동의하고, 피신청인은 기존 소각로에 대해 매연피해 방지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개축 때에는 최신식으로 설치한다.
- (3) 피신청인은 000시 화장터 명칭 속에 향후 「000」의 지명을 넣지 않기로 한다.
- (4) 000시 화장터에 대한 통로는 피신청인의 영구차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특별한 이유(재해, 도로공사 등)가 없는 한 林道를 통행하고, 그 밖의 영구차의 경우는 해당 도로를 통행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 (5) 피신청인은 000시와 합병할 경우, 000시 화장터의 사용에 대해서 합병조건에 000시 주민 외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한다.

- (6) 피신청인은 ○○○지역도로 전봇대에 장의사의 홍보간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한다.

2. 불연성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히로시마현 ○○○시에 소재하는 불연성쓰레기매립장(이하 「불연성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한다)에 대해서 1992년도 말까지 존속하는 것에 동의한다.
- (2) 피신청인은 불연성 쓰레기매립장 부근을 흐르는 하천의 상류(현재 수질측정지점 및 신청인과 협의해서 결정한 우물에 대해서 상시 수질측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지역 자치회 회장에 보고한다.
- (3) 피신청인은 불연성쓰레기의 매립처분지, 복토를 충분히 하는 동시에 모기, 파리 등의 발생 방지 및 구제를 실시한다. 쓰레기 운반차량은 청결을 유지한다.
- (4) 피신청인은 ○○○시와 합병할 경우 불연성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에 대해서 합병조건에 ○○○시 구역 외의 불연성쓰레기의 투기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 (5) 피신청인은 불연성쓰레기 매립장에서 원칙적으로 소각을 하지 않도록 한다.
- (6) 피신청인은 불연성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지 않도록 한다.

3. ○○○ 공해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해특별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총액은 720만엔으로 하며 지불기한은 1984년 1월31일로 한다.

4. 공공시설의 정비 등에 관한 합의에 대해서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 당사자간의 분쟁 경과에 입각해 당사자간에 조정을 요구하는 사항의 대체조치로서 별첨1 각서에 기재된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또한 당사자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한다.

5.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피신청인과 신청인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시 화장과 불연성 쓰레기매립장 운영상황 및 각서에 기재된 공공시설정비사업 등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 협의하고 사업 추진과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한다.

6. 히로시마현공해심사회 1976년(조) 제1호사건 의무불이행에 대해서

히로시마현공해심사회 1976년도(조) 제1호사건 관련 조정에서 확정된 의무 중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는 것은 본 조정의 성립과 동시에 소멸되고, 동 사건 관련 의무이행권고 신청(1981년 8월25일 신청)은 본 조정 성립과 동시에 이를 철회한다.

7. 본 조정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별첨1

각 서

히로시마현공해심사회 1983년도(조) 제1호사건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히로시마공해심사회 1976년도(조) 제1호사건에 관련 조정 성립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의무이행 권고 신청경과에 입각해 협의를 계속한 결과 다음사항에 대해서 합의했다.

1. 공공시설 정비 등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다음 사업들을 1983년도부터 10년간 실시한다. 다만 사업용지의 확보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방화수조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5개소, 생략)
- (2) 일본도로공단이 조성하는 신청인 지구내 토지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한다.
소프트볼장, 배구 및 테니스코트, 야간조명 및 급수 설비, 화장실, 창고
- (3) 노인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집회실의 증축, 옥외조명설비의 설치
- (4)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도로확장외 9건).
- (5) 피신청인은 하로시마현과 합병할 경우 공공시설의 정비(도로확장외 9건, 생략) 등에 대해서 합병조건에 계속 이를 실시할 취지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방법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신청인 지역자치회가 설치한 방법가로등은 피신청인이 지역자치회로부터 기부 받아 관리한다.

3. 하천의 청소위탁에 대해서

피신청인은 하천의 청소를 매년 1회 신청인 지역자치회에

위탁해서 실시한다.

4. 기타

- (1) 피신청인은 하천의 보수를 위해 사방하천 보수의 최우선 사업으로서 국가 및 현에 적극적으로 요망한다.
- (2) 이 각서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각서 성립 경위와 쌍방이 교환한 자료 등에 기초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가급적 신속히 성실히 협의한 다음 정한다.

본 조서를 당사자 쌍방에게 읽어준 결과, 당사자 쌍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승인하고 서명 날인했다.

신청인대리인	변호사	(생략)
신청인		(5명, 생략)
피신청인 〇〇〇시 대리인		(3명, 생략)

1983년 10월21일

하로시마현공해심사회 1983년도(조) 제1호사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	(생략)
조정위원	(2명, 생략)

